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회의 결과

I. 핵심 요지

- Aid for Trade의 DDA 협상에 대한 기여방안과 관련, AfT가 시장접근 기회를 개도국/LDC들이 실제로 활용할 있도록 공급측면 능력배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비용 (adjustment cost)도 AfT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AfT가 DDA 협상 자체와는 de-link되어야 하며, DDA의 level of ambition을 낮추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됨
- 참가자들은 AfT 수혜대상 분야·범위 및 동 선정기준, 재원조달 등 관련 Aid for Trade의 운영 모델리티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AfT가 비-LDC 취약 개도국 지원, 민간업체 육성 등에도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한편, Aid for Trade를 위한 전체 재원수요가 매우 클 것이므로 지원분야 선정시 수혜국 스스로가 추가 개발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aid”가 아니라 “investment”의 개념에서 AfT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
- Stiglitz 교수는 Integrated Framework 등 기존 메카니즘의 강화, 추가 재원 확보, WTO를 활용한 구속적 지원 약속 및 이행,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운영체제 등을 내용으로 AfT 실행을 위한 Global Trade Facility를 설치하는 구상을 제시함.
 - 참가자들은 대체로 AfT의 필요성, 재원조달, 운영, 효율성 제고 등 관련 사항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WTO를 통한 지원의 구속적 약속 및 이행” 방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 민간 부문 참가자들은 AfT의 성과를 위해 “Developing African Supply Chains for AGOA”의 예와 같은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함을 강조함.

II.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무역을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통합, 특히 DDA 차원에서 시장접근의 기회를 개도국/LDC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Aid for Trade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세계은행/IMF, WTO(Aid for Trade Task Force), OECD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방안 모색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됨.
- 개발협력의 효율 및 성과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cohere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양자협력에 더하여 다자 개발협력 노력에 대한 참여 및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등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정보통신 등 인프라 구축, 직업훈련센터 건립 및 직업교육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리나라 개발경험 공유 등 Aid for Trade의 핵심요소인 공급능력 배양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세계은행/IMF, UNDP, WTO 등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협력 사업을 Aid for Trade의 틀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Integrated Framework 및 Aid for Trade에 대한 재원기여 방안도 검토

III. 의제별 논의 내용

1. Aid for Trade의 DDA 협상에 대한 기여방안

가. 발표 내용

- 세계은행 대표(Bernard Hoekman)는 (1) AfT가 DDA 협상의 개발측면에 기여하는 점이 있으나 대부분의 AfT 아젠다는 WTO 범위 밖의 개발문제에 관련되는 것이며, (2) 무역자유화에 따른 조정비용 관련, adjustment assistance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며, (3) DDA에 따른 조정비용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인 바, WTO 관련 AfT는 WTO 협정 및 약속(commitments) 이행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함.
 - 아울러, 아프리카 내륙국의 경우 수출액의 30%가 운송비용이며, 미국 볼티모어에서 Durban(남아공)까지의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2,500임에 비해 볼티모어에서 Durban 경우 Mbabane(스와질랜드)까지의 운송비용이 \$12,000에 달하는 점 등을 예를 들면서 아프리카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 IMF 대표는 DDA 협상결과 이행을 위해 AfT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DDA 협상 자체와는 de-link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AfT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 전략과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함.

- South Center 대표(Samuel Asfaha)는 DDA 협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AfT의 요건으로 (1) 충분한 수준의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신규 재원 투입, (2) 개도국의 DDA 협상참여 또는 개발정책과 관련한 조건 (conditionality) 부과 금지 (3) 공여국이 아니라 수혜 개도국에 의한 우선 순위 설정, (4) 효과적인 AfT 이행 점검 메카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공급측면 능력배양 이외에도, 특허 잠식, 국제식품가격 상승, 관세수입 감소, 고용 등 생산요소 관련 비용, 표준 등 요건 준수비용, WTO 협정 이행비용 등 무역자유화에 대한 조정비용(adjustment cost)도 AfT의 지원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나. 논의 내용

- 이집트는 시장개방을 이행하는 국가에게 AfT가 주어져야 하며 자유화에 따른 조정 및 이행비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능력배양 이슈는 중장기 목표로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콜롬비아는 AfT는 자유화를 이행하는 국가에 한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
- 코스타리카는 개발의 요소로서 시장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특허잠식은 일부국가의 일부품목에 한정된 문제에 불과하므로 특허잠식 문제에 대한 myth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함.
- 케냐는 시장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AfT가 시장접근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언급

2. Aid for Trade에 대한 개도국의 기대

가. 발표 내용

- Senadhira 당지 스리랑카 대사는 AfT가 최근 폭넓게 논의되어 왔으나, 어떻게 동 메카니즘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고, 우선 AfT의 주요 수혜대상(primary target group)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 홍콩각료선언 제57항은 AfT의 목표가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등 AfT가 LDC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미국, EU 등에 특혜시장접근이 없는 일부 아시아 개도국들은 LDC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바, 현재 LDC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Integrated Framework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비-LDC 개도국에도 AfT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arrangement)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적 능력배양에 추가하여 민간 수출업계를 육성하는 데 AfT 자원의 일부가 투입되어야 함을 지적
- UNDP 대표(David Luke)는 AfT 관련 협의 프로세스에서 개도국 이해 반영문제, 새로운 수혜 조건(conditionality) 부과 여부, 개도국의 DDA 협상 참여 유도를 위한 선진국의 “buy-out” 시도인지 여부, 추가재원 투입여부, Aid for Trade와 Aid for Development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모델리티는 어

땡게 될 것인지 등을 AfT와 관련한 개도국들의 우려 및 관심 사항으로 지적함.

- 한편, AfT의 대상으로 공급능력 배양 등 무역관련 능력배양과, 특혜잠식 및 협정 이행 비용 등 조정비용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UNDP의 AfT 관련 활동은 무역관련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소개

■ Ms. Hilde Johnson 전 노르웨이 국제개발장관은 EU의 EBA 등 특혜시장접근 부여가 LDC의 수출확대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생산능력 배양,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개발, 빈곤감소전략에서 무역의 주류화 등을 위한 AfT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조정비용에 대한 지원은 일종의 compensation으로 AfT와는 별개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AfT 재원은 무역능력배양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원의 규모확대, multi-year commitment 등을 통한 예측 가능성 증대, 세계적 차원에서의 재원조달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나. 논의 내용

- 방글라데시는 DDA에서는 LDC가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가 면제되나, 국제금융기구(IFIs)는 지원조건으로 WTO 이상의 무역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coherence 부족의 사례로 지적하면서, coherence의 중요성을 강조함.
- IDB 대표는 AfT를 통한 공급측면 능력배양 논의 시 민간업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스리랑카는 AfT에 민간분야 참여문제 관련, AGOA에서 초기단계부터 민간분야를 참여시켰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Johnson 전 노르웨이 장관은 AfT 활동, 수혜 기준,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영연방사무국 대표는 시장 메카니즘만으로는 적절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고 있는 지역 인프라(regional infra) 구축 등에 AfT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3. 효과적인 Aid for Trade의 요소

가. 발표 내용 (Stiglitz 컬럼비아대 교수)

- AfT의 원칙으로 추가적인 지원 및 재원 투입(additionality), WTO에서의 commitment 및 구속적 이행 메카니즘 등을 활용한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conditionality 없이 수혜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발전략에 통합(country ownership), 공여국간 공조 강화 등 일관성(coherence), 공공투자·기업육성·기업환경 개선 등 민간업계 지원(private sector), 프로젝트 성격 및 수혜국 여건 등 상황에 따른 무상지원과 대출의 활용(grants vs. loans) 등을 제시함.
- 개도국들은 재정수입 감소, 국제식량가격 상승, 특혜잠식, 이행비용 등 DDA 협상에 따른 더 큰 조정비용에 직면하고 있음.
- LDC의 시장접근성 저하는 관세장벽이 아니라 인프라부족, 기술표준, 자본부족, 열악한 기업

환경 등에 더욱 기인하는 바, 정책능력 및 국내 제도 발전, 금융·기술·지식 등 기업발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함.

- AfT 실행을 위한 Global Trade Facility(GTF) 설치를 제안함.
 - 6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Integrated Framework를 단일 기구를 통한 운영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메카니즘 강화
 - 기존 약속 이외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DDA에서 binding한 지원에 합의하고 이를 WTO를 통해 이행
 - GTF를 세계은행에 설치하여 세계은행의 in-country presence 등을 조직, 경험 활용
 - 선진국 및 개도국이 참여하는 관리·운영체제 구축

나. 논의 내용

- 세계은행 대표는 AfT 지원에서 국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객관적인 지원 및 accountability가 중요하며 conditionality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WTO는 이행 기능보다는 투명성, 정보 및 지식 제공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IMF 대표(Jean-Pierre Chauffour)는 AfT의 필요성, 재원조달,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등과 관련한 Stiglitz 교수 발표내용에 공감을 표하고, 다만 WTO의 구속적 메카니즘을 활용해 AfT를 이행하지는 방안은 법적구속력 있는 원조 의무 부담에 대한 공여국들의 거부감을 감

안할 때 비현실적임을 지적함.

- 아울러, AfT 관련 IMF의 주요 기여 분야는 (1) 무역개혁에 따른 조정비용 평가 등 analytical support 및 정책대화, (2) 관세인하의 재정적 영향, 관세 및 세제 개혁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 (3) 금융지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
- Stiglitz 교수는 자유화 약속뿐만 아니라 지원 약속도 binding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Global Trade Facility 설치를 통해 세계은행/IMF의 governance의 민주성 부족을 극복하고 개도국의 이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governance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함.
 - 한편, AfT 재원이 교육 등 다른 분야 개발재원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
- 수파차이 UNCTAD 사무총장은 AfT의 진전방향을 아직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동논의가 DDA 협상의 level of ambition의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AfT의 적용범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DDA 이후에도 개발정책에서의 무역의 주류화(mainstreaming)를 위해 무역 관련 지원 메카니즘은 계속 강화되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함.
 - 아울러, WTO에서의 AfT Task Force 논의 시 coherence 제고를 위한 Advisory Group 구성 방안 제안
- IMF는 AfT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AfT에 대한 공통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디오피아는 개도국/LDC들이 AfT에 큰 기대

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AfT의 수혜범위가 폭 넓고 다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며, WTO 가입 프로세스에 있는 LDC들도 AfT 수혜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룩셈부르크는 국제시장 진출 능력이 부족한 빈국의 대다수 생계농에게는 국내시장, 지역내 시장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적·지역적 인프라 구축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함.
- 모리셔스는 특혜잠식 등이 일부국가에 미치는 큰 영향을 미침을 지적하고 그러한 조정과정에서 국제지원이 핵심적임을 강조함.

4. Aid for Trade와 공급측면 제약 극복 및 구조조정 비용

가. 공급측면 제약 극복

- 세계은행은 인프라 구축, 규제비용 등 거래비용 감소, Working Capital 등 자본에 대한 접근, 선진국의 기술·위생기준 등 장벽 극복 등을 공급측면 제약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함.
- IDB 등은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 및 마케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AfT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논의보다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동 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무역장벽 완화 등

구체적인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 스리랑카는 AfT가 개발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AfT의 역할에 대해 현실적인 ambition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나. 구조조정 비용

- UNCTAD 사무국 대표는 개도국의 경우 조정비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나 어떠한 조정비용에 대해 AfT를 통한 지원을 제공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조정비용 문제는 DDA 뿐만이 아니라, WTO 협정 이행, 자발적 자유화, 지역무역협정 등에서도 계속 제기될 사항이므로 우선순위 선정 등 조정비용을 어떻게 AfT 패키지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함.
- IMF는 관세인하로 인한 관세수입 감소의 경우 정부 재정수입은 감소되나 수입품 가격인하로 인한 혜택은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개혁을 통해 재정수입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우간다는 LDC라고 하더라도 LDC와 같은 공동관세지역에 속하는 비-LDC가 관세인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동 LDC도 관세인하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함.

[자료: 주제네바대표부]